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21
----------	-------

발의연월일 : 2026. 3. 4.

발 의 자 : 서영교 · 박희승 · 임오경
박지혜 · 이해식 · 장경태
박균택 · 정준호 · 양부남
윤준병 · 이성윤 · 김원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후 6·25전쟁, 베트남전쟁, 연평도 포격전 등 국가 위기마다 최선봉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그 전투력과 전략적 가치를 실전으로 증명해 왔음. 특히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며 국가 전략 전력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음.

또한 최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주변국들은 상륙전력과 도서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우리 해병대 역시 서북도서 및 전략도서 방위, 신속대응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그 역할을 확대·발전시켜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군조직법」은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용 현실과 전략적 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병대의 작전개념 발전, 전력 구조 개편, 편성

· 장비 확보 및 교육·훈련 체계 확립에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법률에 명시하고, 그 주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하며,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고, 해병대의 소속으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병대의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하여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準) 4군 수준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각군”을 “각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를 “해상작전을 주임무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11조 중 “각군”을 “각군 및 해병대”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각군”을 “각군 및 해병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u>각군</u> 의 주임무 등) ① (생략)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u>해상작전을</u> ,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u>주임무로</u>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③ · ④ (생략) <u><신 설></u>	제3조(<u>각군</u> 등의 주임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해상작전을 주임무로</u>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u>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u> <u>로서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u> <u>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u> <u>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u> <u>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u> <u>련을 한다.</u>
제11조(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u>각군</u> 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u>각군 및 해병대</u> ----- ----- ----- ----- ----- -----.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생략)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u>참모총장</u>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u>다만,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u> ③ · ④ (생략)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 <u>각군</u>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② ----- -----<u>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u>----- -----<u>. <단서 삭제></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 <u>각군 및 해병대</u>----- -----. ② · ③ (현행과 같음)
---	---